

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같은 표 사무명란 제5호 중 “제2호에 따른 지형도면”을 “지형도면”으로, “사무”를 “사무(다만,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시설의 접도조건을 시장과 협의를 통해 자치구가 필요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을 조정하며, 위임기준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54조제13항)

다.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 입체·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등을 재정비함(안 별표4)

◆ 서울특별시조례 제7002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지진·화재 및 공사장”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가.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 나.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 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 라.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 마.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 바. 주택·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사. 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 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 다.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 마.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 바.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9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건축안전센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 ” 를 “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구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 을 “제3항” 으로, “다음 표” 를 “별표 6” 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제49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

제50조제2항제9호(중전의 제8호) 중 “피난·화재” 를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시·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보완하여 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업무의 체계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명시함(안 제49조제2항)
  - 나. 구 건축안전센터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49조제3항)
  - 다. 안전점검 등급기준을 별표 6으로 개정함(안 제49조제4항)
  - 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등을 포함시킴(안 제50조제2항제8호)

[별표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등급기준

등급	기 준
우수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 확보
양호	일부 부재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에는 지장 없으며 일부 보수 필요
보통	광범위한 부재 결함 발생. 안전에는 지장 없으며 간단한 보수보강 필요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정밀안전점검 등 실시) 안전등급 결정 등 관리가 필요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금지 여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필요

◆ 서울특별시조례 제7003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다둥이 행복카드(서울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 으로 한다.